

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칙

제정: 2006. 9. 29

개정: 2019. 7. 16

개정: 2021. 6. 3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7.16)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임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임기 중 위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. (개정 2019.7.16)

1. 당해 학년도에 문제 출제 등 기타 입학 전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자
2. 입학처 소속의 교직원

③ 위원 중에는 연구정보처장이 추천하는 전산전문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 2021.06.03.)
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제1차 입학전형일자 1개월 전부터 다음 학년도 3월말까지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 입학 전형의 사전·중간·사후 자체감사 실시
2. 대학 입학 부정방지 대책 심의
3. 입학전형업무의 공정관리에 관련한 총장 자문
4. 기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

제4조 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모집시기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각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
제6조 (회의록 및 보고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은 위원장, 간사를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.

② 위원회는 활동의 주요 과정 및 자체 감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입학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)① 기획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한다.

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기획팀-824호 : 2021.06.03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